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보윤의원·서미화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254 발의연월일: 2024. 12. 5.

발 의 자:최보윤·서미화·김선교

정성국 • 서천호 • 윤종오

성일종 • 진종오 • 남인순

윤영석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유엔장애인권리협약(CRPD)에 따르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의이행을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, 행정적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,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야기하는 기존의 법률, 규칙, 관습 및 관행을 개정 또는 폐지하기 위하여 입법사항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음.

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법률 개정 검토,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인 바, 국내법령과 이 협약이 상충 내지 충돌되는 부분의 개정과 협약 내용과의 부합성을 검토하여 국내법이 협약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현행법상 장애인 인권에 영향을 미칠 법률 조문을 개정함으로

써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(안 제48조제1항 등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8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장애인이 신문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장애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능력이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제1편제14장의 제목 "通譯과 飜譯"을 "의사소통"으로 한다.

제181조의 제목 "(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통역)"을 "(장애인의 의사소통)"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"통역하게 할 수 있다"를 "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"로 한다. 제244조의5제1호 중 "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"를 "의사의 결정·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"로 한다.

제276조의2제1항제1호 중 "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" 를 "의사의 결정· 전달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아 제48조(조서의 작성 방법) ① 피 제48조(조서의 작성 방법) ① --고인, 피의자, 증인, 감정인, 통 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(訊問) 하는 때에는 신문에 참여한 법 원사무관등이 조서를 작성하여 야 한다. <후단 신설> ----. 이 경우 장애인이 신문 의 당사자가 된 경우에는 장애 특성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추 고 장애인과의 의사소통 능력 이 있는 법원사무관등이 조서 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~ ⑦ (생 략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 第14章 通譯과 飜譯 第14章 의사소통 제181조(청각 또는 언어장애인의 제181조(장애인의 의사소통) ---통역) 듣거나 말하는 데 장애 가 있는 사람의 진술에 대해서 는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 -----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의사소 게 할 수 있다. 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 제244조의5(장애인 등 특별히 보 제244조의5(장애인 등 특별히 보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) 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)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

자를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의자 ·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.

- 1. 피의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때
- 2. (생략)
- 제276조의2(장애인 등 특별히 보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)
 ① 재판장 또는 법관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 법정대리인 · 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할 수 있다.
 - 1. 피고인이 신체적 또는 정신 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·전달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
 - 2. (생략)
 - ② (생략)

1
의사의 결정·전달에 지원이
필요한 경우
2. (현행과 같음)
제276조의2(장애인 등 특별히 보
호를 요하는 자에 대한 특칙)
①
1
의사의 결정·전달에 지원이
<u>필요한 경우</u>
2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